

의안번호	2213106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1.22.
추 계 번호	25B51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 기간 초과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하며, 2027년에 939~3,426억원, 2031년에 1,046~3,822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958~1조 8,106억원(연평균 992~3,621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 시나리오2: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10% 증가
- 시나리오3: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16.9%¹⁾) 수준으로 증가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939	965	991	1,018	1,046	4,958	992
시나리오2	2,409	2,476	2,544	2,614	2,687	12,730	2,546
시나리오3	3,426	3,521	3,618	3,719	3,822	18,106	3,621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건수와 승인을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가재정소요는 산재신청 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별(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 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7. 본 추계서의 지급단가는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을 1인당 평균 요양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지급단가의 산출 기준에 따라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1)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1항)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및 <u>재해조사</u>	의무규정
3	안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신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함.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규정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함(제3항)	의무규정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됨(제4항)	의무규정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됨(제5항)	의무규정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제6항)	의무규정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7항)	재량·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함. 재해조사의 종류·방법·대상·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4	안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재량규정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신설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92조(근로복지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1항) 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의무규정
7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함(제6항 신설)	의무규정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신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재해조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	• 미대상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 단”)의 사업으로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 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 고²⁾,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현재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재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됨

2)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3)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
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
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	• 미대상(제1항 및 제2항)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재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조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임 – 현행법령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급여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재해조사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3항~제7항)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키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	• 공식추계 – 본문참조
5	안 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함
7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 미대상 –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⁵⁾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5.11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3	3.2	3.3	3.3	3.3	3.3	3.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①재해조사 기간⁶⁾을 초과한 경우, ②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④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다만, 상술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대상 중 ②·③·④의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는 대상자의 수 및 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 기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의 시행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재해조사 기간 초과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보험급여의 지출 증가분임
 - 본 추계서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⁷⁾ 및 휴업급여⁸⁾에 한하여 산출

6) 안 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생략>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불인정 건에 대한 환수액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2025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코드: 7084-104), 기관운영경비(코드: 7084-204), 청사임차비(코드: 7084-206)를 지원받고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의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재해조사의 기간이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초과한 경우임
 - 최근 5년간 우선 지급 대상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64,594	69,544	76,996	86,378	92,719
	휴업급여	57,205	61,191	67,404	75,393	80,048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8,685	10,770	11,352	15,072	17,527
	휴업급여	5,794	6,198	5,590	8,413	10,721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329	283	230	227	144
	휴업급여	183	163	131	140	88

주: 요양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기준, 승인자 기준(업무상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휴업급여의 경우 1회차 최초요양급여 승인자에게 2025.10.31.까지 지급 결정된 휴업급여 수급자 수를 각 승인 연도에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 2024년 기준 요양급여 신청건수 및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음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3]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승인현황

(단위: 건, %)

구 분	신청건수	승인	승인률	불승인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	97,798	92,719	94.8	5,079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30,510	17,527	57.4	12,983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306	144	47.1	162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기준(업무상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 휴업급여의 신청건수는 2024년 기준 수급자 수에 요양급여의 승인률을 적용하여 산출
 - 2024년 기준 우선 지급 대상 수급자 수와 승인률을 토대로 신청건수를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건수(추정치)

(단위: 건)

구 분	요양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	97,798	84,439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30,510	18,678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306	18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가. 총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신청건수에 지급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신청건수) 산업재해는 ‘재해’라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도의 도입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급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
 - 시나리오1: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 시나리오2: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10% 증가
 - 시나리오3: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16.9%⁹⁾) 수준으로 증가

- 본 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표 5]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추정치): 2027~2031년

(단위: 건)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1	요양급여(7)	97,798	97,798	97,798	97,798	97,798
	휴업급여(7)	84,439	84,439	84,439	84,439	84,439
	요양급여(90)	30,510	30,510	30,510	30,510	30,510
	휴업급여(90)	18,678	18,678	18,678	18,678	18,678
	요양급여(180)	306	306	306	306	306
	휴업급여(180)	187	187	187	187	187
시나리오2	요양급여(7)	107,578	107,578	107,578	107,578	107,578
	휴업급여(7)	92,883	92,883	92,883	92,883	92,883
	요양급여(90)	33,561	33,561	33,561	33,561	33,561
	휴업급여(90)	20,545	20,545	20,545	20,545	20,545
	요양급여(180)	337	337	337	337	337
	휴업급여(180)	206	206	206	206	206
시나리오3	요양급여(7)	114,342	114,342	114,342	114,342	114,342
	휴업급여(7)	98,723	98,723	98,723	98,723	98,723
	요양급여(90)	35,671	35,671	35,671	35,671	35,671
	휴업급여(90)	21,837	21,837	21,837	21,837	21,837
	요양급여(180)	358	358	358	358	358
	휴업급여(180)	218	218	218	218	218

주: 1. 요양급여(7) 및 휴업급여(7)는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90) 및 휴업급여(90)는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일수) 2024년 기준 지급일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9)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표 6]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평균 지급일수

(단위: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요양급여(7)	157.5	151.6	143.4	137.9	126.9
휴업급여(7)	147.8	142.3	133.9	127.2	115.4
요양급여(90)	363.2	335.3	315.2	307.6	289.9
휴업급여(90)	403.6	411.2	395.1	335.5	275.4
요양급여(180)	730.2	887.6	983.5	1034.2	1,052.3
휴업급여(180)	926.8	1,004.0	976.6	983.3	685.1

주: 요양급여의 경우 1회차 최초요양급여 승인자의 2025.10.31.까지 결정된 요양일수를 수급자 수로 나누어 각 승인 연도에 기재하였으며, 휴업급여의 경우 1회차 최초요양급여 승인자에게 2025.10.31.까지 지급 결정된 휴업급여 수급자 수를 각 승인 연도에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단가) 2024년 기준 일 평균 지원단가를 토대로 산출

[표 7]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요양급여	29,970	28,280	27,960	31,570	28,320
휴업급여	59,850	62,600	64,840	67,950	64,260

주: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급여액을 1인당 평균요양기간으로 나눈 금액

자료: 고용노동부

- (요양급여) 2024년 기준 요양급여 지원단가에 2025년 수가인상률(1.96%¹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5년 기준 수가인상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휴업급여) 2024년 기준 휴업급여 지원단가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8] 산재보험급여 지원단가(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요양급여	30,018	30,606	31,206	31,818	32,442
휴업급여	70,705	73,017	75,397	77,854	80,39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수가인상률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에 지급일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은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총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2024.6.1.

[표 9] 총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요양급여(7)	3,725	3,798	3,873	3,949	4,026	—	—
	요양급여(90)	2,655	2,707	2,760	2,814	2,869	—	—
	요양급여(180)	97	99	100	102	104	—	—
	휴업급여(7)	6,890	7,115	7,347	7,586	7,834	—	—
	휴업급여(90)	3,637	3,756	3,878	4,005	4,135	—	—
	휴업급여(180)	91	93	97	100	103	—	—
	소계	17,094	17,568	18,055	18,556	19,072	90,346	18,069
시나리오2	요양급여(7)	4,098	4,178	4,260	4,344	4,429	—	—
	요양급여(90)	2,921	2,978	3,036	3,096	3,156	—	—
	요양급여(180)	106	108	111	113	115	—	—
	휴업급여(7)	7,579	7,826	8,082	8,345	8,617	—	—
	휴업급여(90)	4,001	4,131	4,266	4,405	4,549	—	—
	휴업급여(180)	100	103	106	110	113	—	—
	소계	18,804	19,325	19,861	20,412	20,979	99,380	19,876
시나리오3	요양급여(7)	4,356	4,441	4,528	4,617	4,707	—	—
	요양급여(90)	3,104	3,165	3,227	3,290	3,355	—	—
	요양급여(180)	113	115	117	120	122	—	—
	휴업급여(7)	8,055	8,319	8,590	8,870	9,159	—	—
	휴업급여(90)	4,252	4,391	4,534	4,682	4,835	—	—
	휴업급여(180)	106	109	113	117	120	—	—
	소계	19,986	20,540	21,109	21,695	22,298	105,629	21,126

주: 1. 요양급여(7) 및 휴업급여(7)는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90) 및 휴업급여(90)는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의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추가재정소요

□ (기준선) 기준선은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보험급여로, 2024년 기준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토대로 산출

- 기준선은 현행법에 따라 산재 인정 결정 후 지급될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이때, 산재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에 따른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표 10] 기준선(추정치): 2027~2031년

(단위: 건, 일,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건수(A)	요양급여(7)	92,719	92,719	92,719	92,719	92,719
	요양급여(90)	17,527	17,527	17,527	17,527	17,527
	요양급여(180)	144	144	144	144	144
	휴업급여(7)	80,048	80,048	80,048	80,048	80,048
	휴업급여(90)	10,721	10,721	10,721	10,721	10,721
	휴업급여(180)	88	88	88	88	88
지급일수(B)	요양급여(7)	127	127	127	127	127
	휴업급여(7)	115	115	115	115	115
	요양급여(90)	290	290	290	290	290
	휴업급여(90)	275	275	275	275	275
	요양급여(180)	1,052	1,052	1,052	1,052	1,052
	휴업급여(180)	685	685	685	685	685
지급단가(C)	요양급여	0.030	0.031	0.031	0.032	0.032
	휴업급여	0.071	0.073	0.075	0.078	0.080
재정소요 (D=A×B×C, 억원)	요양급여(7)	3,532	3,601	3,672	3,744	3,817
	요양급여(90)	1,525	1,555	1,586	1,617	1,648
	요양급여(180)	45	46	47	48	49
	휴업급여(7)	6,531	6,745	6,965	7,192	7,426
	휴업급여(90)	2,088	2,156	2,226	2,299	2,374
	휴업급여(180)	43	44	45	47	48
	합계	13,764	14,148	14,541	14,946	15,363

주: 1. 요양급여(7) 및 휴업급여(7)는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90) 및 휴업급여(90)는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은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안은 재해조사 기간을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우선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추계서의 산재보험급여 승인률은 2024 기준 요양급여 승인률을 토대로 산출하며,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장래에 발생할 산재보험급여 승인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환수율은 현행법¹¹⁾에 따른 환수현황을 적용하여 추산하며, 2024년 기준 징수결정

11)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71.8%)을 준용하여 산출

- 장래에 발생할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추계기간 동안 2024년 기준 환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환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1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및 환수액(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 1	요양급여 (A1)	요양급여(7)	194	198	201	205	209
		요양급여(90)	1,131	1,153	1,176	1,199	1,222
		요양급여(180)	51	52	53	54	55
	휴업급여 (B1)	휴업급여(7)	358	370	382	394	407
		휴업급여(90)	1,549	1,600	1,652	1,706	1,762
		휴업급여(180)	48	49	51	53	54
	합계(C1=A1+B1)		3,331	3,422	3,516	3,612	3,710
	환수액(D1=C1×71.8%)		2,391	2,456	2,523	2,592	2,663
시나리오 2	요양급여 (A2)	요양급여(7)	213	217	222	226	230
		요양급여(90)	1,244	1,269	1,293	1,319	1,345
		요양급여(180)	56	57	58	60	61
	휴업급여 (B2)	휴업급여(7)	394	407	420	434	448
		휴업급여(90)	1,704	1,760	1,817	1,877	1,938
		휴업급여(180)	53	54	56	58	60
	합계(C2=A2+B2)		3,665	3,765	3,867	3,973	4,081
	환수액(D2=C2×71.8%)		2,630	2,702	2,776	2,851	2,929
시나리오 3	요양급여 (A3)	요양급여(7)	226	231	235	240	245
		요양급여(90)	1,322	1,348	1,375	1,402	1,429
		요양급여(180)	60	61	62	63	65
	휴업급여 (B3)	휴업급여(7)	419	433	447	461	476
		휴업급여(90)	1,811	1,871	1,932	1,995	2,060
		휴업급여(180)	56	58	60	62	64
	합계(C3=A3+B3)		3,895	4,001	4,110	4,223	4,338
	환수액(D3=C3×71.8%)		2,795	2,872	2,950	3,031	3,113

주: 1. 요양급여(7) 및 휴업급여(7)는 업무상 사고의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2. 요양급여(90) 및 휴업급여(90)는 업무상 질병의 조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함
 3. 요양급여(180) 및 휴업급여(180)는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의 조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추가재정소요는 총재정소요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와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차감하여 산출

[표 12]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총재정소요(A1)		17,094	17,568	18,055	18,556	19,072	90,346	18,069
기 준 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13,764	14,148	14,541	14,946	15,363	72,762	14,55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1)	2,391	2,456	2,523	2,592	2,663	12,626	2,525
	소계(D1=B1+C1)	16,155	16,604	17,064	17,538	18,026	85,387	17,077
추가재정소요(E1=A1-D1)		939	965	991	1,018	1,046	4,958	992
시나리오2								
총재정소요(A2)		18,804	19,325	19,861	20,412	20,979	99,380	19,876
기 준 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13,764	14,148	14,541	14,946	15,363	72,762	14,55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2)	2,630	2,702	2,776	2,851	2,929	13,888	2,778
	소계(D2=B1+C2)	16,394	16,849	17,317	17,797	18,292	86,650	17,330
추가재정소요(E2=A2-D2)		2,409	2,476	2,544	2,614	2,687	12,730	2,546
시나리오3								
총재정소요(A3)		19,986	20,540	21,109	21,695	22,298	105,629	21,126
기 준 선	기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B1)	13,764	14,148	14,541	14,946	15,363	72,762	14,552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3)	2,795	2,872	2,950	3,031	3,113	14,761	2,952
	소계(D3=B1+C3)	16,560	17,019	17,491	17,977	18,476	87,523	17,505
추가재정소요(E3=A3-D3)		3,426	3,521	3,618	3,719	3,822	18,106	3,621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을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본 추가재정소요는 산재신청 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별(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 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7. 본 추계서의 지급단가는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을 1인당 평균 요양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지급단가의 산출 기준에 따라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승인율, 회수 및 환수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우선 지급 등에 따른 시차로 인한 기금운용수익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총재정소요 또는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